

### 3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(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 근거 마련)
- 나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공매도 호가 입력 내용 및 주문 수탁 내용에 공매도 등록번호 추가)
- 다.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형식폐지사유와 실질심사사유 중복시 병행 처리)
- 라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증거금 현금 및 외화 운용 실무사항 지침 위임)
- 마. 시장감시규정 (시장감시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 등 마련)
- 바. 회원관리규정 (회원지위 변동 사실, 회원조치·조치해제 정보 ATS 공유 근거 신설)
- 사. 증권·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(증권시장 거래증거금을 적용 대상 명시)
- 아. 정관 (다자간매매체결회사 관련 업무 반영)

## 3. 한국거래소 규정\*

### 가.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(2025/3/28 개정 · 2025/4/1 시행)

#### 1) 개정 이유

- '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'(금융위 등, 2025. 1. 21)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기업이 거래소에 제출한 개선 계획의 주요 내용을 투자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
- '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·배당부문 간담회'(금융위, 2024. 4. 2)와 관련하여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

#### 2) 주요 내용

- 개선계획 주요내용 공시 관련 자율공시 항목 신설(제8조 제19호)
  -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중인 기업이 기업심사위원회나 상장공시위원회로부터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경우 개선계획의 주요 내용을 자율공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-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근거 마련(제13조 제1항)
  - 「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지침」에 따라 선정된 밸류업 우수기업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대상에 포함

\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### 3) 관련 규정

-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(2025/3/28 개정 · 2025/4/1 시행)
  - 제13조 제22호, 제15조의2 제1항
  
-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(2025/3/28 개정 · 2025/7/1 시행)
  - 제9조 제25호

## 나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5/3/26 개정 · 2025/3/31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공매도 제도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회원의 호가 입력내용 및 주문수탁 내용에 공매도 등록번호를 추가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- 호가 입력내용에 공매도 등록번호 추가(제12조 제1항)
  - 주권에 대하여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위탁자나 회원이 보유한 공매도 등록번호를 추가 입력하도록 함
  
- 수탁의 내용에 공매도 등록번호 추가(제108조)
  - 주권에 대하여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주문을 수탁하는 경우 공매도 등록번호를 수탁 내용에 추가하도록 함

### 3) 관련 규정

-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5/3/26 개정 · 2025/3/31 시행)
  - 제7조 제1항, 제40조
  
-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5/3/26 개정 · 2025/3/31 시행)
  - 제7조, 제67조

**다.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2025/3/18 개정 · 2025/3/19 시행)****1) 개정 이유**

- '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'(2025. 1. 21. 금융위) 관련 조치로서, 매매거래 정지기간 장기화 방지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형식·실질 사유 중복시 병행 처리 등 퇴출제도를 개선하기 위함

**2) 주요 내용**

- 형식·실질사유 중복시 병행 처리(제25조 제4항)
  - 형식폐지사유와 실질심사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절차를 별개로 진행하는 점을 명확화

**3) 관련 규정**

- 코넥스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(2025/3/18 개정 · 2025/3/19 시행)
  - 제10조의2

**라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5/3/24 개정 · 2025/3/26 시행)****1) 개정 이유**

- 증거금 현금 및 외화 운용 관련 실무적인 사항을 지침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

**2) 주요 내용**

- 거래증거금의 운용(제102조의2 제3항, 제4항)
  - 증거금 현금 및 외화 운용 실무사항 지침 위임
    - 거래소는 현금 또는 외화로 예탁된 거래증거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화별로 일반 운용 및 특별운용의 방법으로 운용

**3) 관련 규정**

-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5/3/26 개정 · 시행)
  - 제58조

## 마. 시장감시규정 (2025/3/5 개정 · 2025/3/31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공매도의 불법·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2024. 10. 22. 개정)에 따라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(NSDS)을 설치·운영하고 공매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- 시장감시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권한 등 마련(제19조의3)
  - 법에 따른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차입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대차거래정보 요구 권한 명시
  - NSDS 제출 내용 확인을 위해 보고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감시위원회에 부여
  - 보고서식, 보고기한 등 NSDS 보고 방법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세칙으로 위임

### 3) 관련 규정

-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(2025/3/13 개정 · 2025/3/31 시행)
  - NSDS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 마련 등(제13조의3)
    - 보고서식, 보고내용, 보고기한, 보고단위 및 보고경로 등을 정하고 정정보고 근거 마련
    - 사실관계확인서 서식 마련, 자료 제출기한 및 제출 방법 명시 등

## 바. 회원관리규정 (2025/3/4 개정 ·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다자간매매체결회사(ATS) 거래 개시 등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맞추어 회원제도를 개선하고 그밖에 실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- 회원지위 변동 사실 ATS 공유 근거 신설(제9조, 제12조 등)

- 현재 설립된 ATS(넥스트레이드) 거래참가자는 본소의 결제회원이어야 하며, 추후 다른 ATS가 설립되더라도 본소 결제회원이 아닌 경우 본소 결제회원에게 ATS거래의 결제를 위탁해야 함
- 증권시장 결제회원의 가입, 탈퇴, 지위 승계, 전환 등의 지위 변동 사실을 ATS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
- 회원조치·조치해제 정보 ATS 공유 근거 신설(제14조, 제39조)
  - 증권시장의 결제회원이 본 규정에 따라 제명 또는 거래정지 등 중대조치를 받거나 조치에서 해제 되는 경우 이를 ATS에 통보하여 함께 거래정지 등 회원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회원조치 형해와 및 청산결제 리스크 예방
- 결제위탁계약 체결 의무 신설(제22조)
  - 본소 결제회원이 아닌 ATS 거래참가자로부터 결제를 위탁받는 결제회원에게 결제위탁계약 체결 의무 부과
- ATS 관련 보고의무 신설(제32조)
  - ATS 거래참가자인 본소 회원이 ATS로부터 제명·거래정지 등 중대조치를 받은 경우 본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
- 회원지위 변동조건 관련 미결제 범위 확대(제10조 등)
  - 결제회원 임의탈퇴, 회원전환 등의 조건인 미결제 및 채무해소의 범위에 ATS거래에 대한 결제분을 포함하도록 확대
- ATS거래 결제위탁을 위한 결제회원 정의 등 정비(제3조)
- 손해배상공동기금 ATS 청산 사용근거 신설(제2조, 제23조)
  - 자본시장법 개정에 맞춰 통합청산소인 본소가 ATS 거래에 대한 결제불이행 발생 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
## 사. 증권·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(2025/3/4 개정·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다자간매매체결회사(ATS) 도입에 따라 제정된 「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」 내용을 지침에 반영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- 「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」 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반영(제1조)

- 기존 유가증권시장·코스닥시장·코넥스시장 업무규정에 있던 청산결제업무 관련 내용을 「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」으로 통합함에 따른 이용 조문 변경 반영

□ 증권시장 거래증거금률 적용 대상 명시(제2조 및 별표 3)

- 다자간매매체결회사(ATS)거래 개시에 따라 증권시장 증거금률 적용 대상에 다자간매매체결회사(ATS)를 통한 거래를 포함

**아. 정관 (2025/3/4 개정·시행)**

**1) 개정 이유**

-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출범에 대비하여 자본시장법상 지정거래소로서 KRX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관련 업무(시장감시 및 청산·결제)를 정관에 반영하기 위함

**2) 주요 내용**

- 시장감시위원회가 수행하는 시장감시, 이상거래의 심리, 회원에 대한 감리 및 분쟁조정 등의 대상에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 및 거래참가자에 관한 사항을 추가(제49조 제4항)
- 청산결제본부가 수행하는 청산, 결제, 리스크관리 등의 대상에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추가하고, 관련 제도 개선 및 규정 제·개정의 근거 마련(제49조 제4항 제4호, 제52조의4 제1호)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